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5년 11월 23일 윤은희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11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건축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문화 진흥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건축정책의 수립 (안 제4조, 제5조)
 - 도지사는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광역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함
-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 건축문화의 진흥 (안 제12조, 제13조)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 설치·운영과 건축문화 진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과 건축디자인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건축문화 진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붙임 : 충청북도 건축기본 조례안 1부. 끝.